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09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2832	서삼석의원	'24.8.14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2204238	임미애의원	'24.9.24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2204563	주호영의원	'24.10.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4.11.11.)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산림자원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4564	주호영의원	'24.10.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4.11.11.)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565	주호영의원	'24.10.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4.11.11.)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유림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행의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보호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도입을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 및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로 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4.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

출하는 연도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관리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체결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협약의 시행) ①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
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
결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
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
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
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
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4.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
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
가직접지불금, 같은 법 제10
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
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
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한 산지
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
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

<신 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신 설>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

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⑤ (생략)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